

Public Partnerships LLC

PO Box 310, Binghamton, NY 13902

팩스: 1-833-951-0828

개인 도우미 계약

-1 = 11	
개인 도우미 성명:	PPL ID:
케이트 이미 서머	

(이름, 성)

본 개인 도우미 계약의 목적은 뉴욕주 소비자 주도 개인 도우미 프로그램(CDPAP)에서 개인 도우미(PA)가 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.

CDPAP의 PA가 되려면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.

일반 규칙:

- 1. PA는 CDPAP에 가입한 사람(소비자)에게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.
- 2. PA가 되려면,
 - 나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 - 나에게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합니다.
 - 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.
 - 내가 만 21세 미만이고 소비자의 부모이거나 보호자인 경우에는, 해당 소비자의 PA가 될 수 없습니다.
 - 내가 소비자의 배우자인 경우, 해당 소비자의 PA가 될 수 없습니다.

개인 도우미 계약 V1O



- 내가 소비자의 지정 대리인(DR)인 경우, 해당 소비자의 PA가 될 수 없습니다.
- 3. PA로 일할 때 나에게는 두 명의 고용주가 있습니다.
 - 소비자(또는 소비자의 DR)가 나의 고용주이고,
 - Public Partnerships LLC (PPL)도 나의 고용주입니다.
- 4. 이런 고용 방식은 종종 "공동" 고용이라고 불립니다.
- 5. "공동" 고용주로서 PPL과 소비자는 서로 다른 책임을 갖습니다.
- 6. 소비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나의 고용 여부를 결정합니다.
 - 내 업무 일정을 정해 줍니다.
 - 업무 교육을 해 줍니다.
 - 근무 시간을 승인해 줍니다.
 - 내 업무를 감독합니다.
 - 필요한 경우 고용 종료를 결정합니다.
- 7. PPL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내가 PA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 - 등록 과정을 관리합니다.
 - 급여를 지급합니다.
 - 급여세를 징수하고 제출합니다.
 - 법원 명령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.

PA로 등록하기

- 8. PA가 되려면 나는 PPL에 등록해야 합니다.
- 9. PPL에 등록한다는 것은 내가 특정 양식을 읽고 작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개인 도우미 계약 V1O



- 10. 등록 과정의 일환으로 나는 건강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11. 등록 과정에서 나는 모든 양식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- 12. 나는 PPL의 지시에 따라 건강 평가 과정을 완료하겠습니다.
- 13. 나는 PPL의 요청에 따라 등록 양식에 전자 서명을 하겠습니다.
- 14. PPL은 내 등록이 완료되거나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나에게 이를 알려줄 것입니다.
- 15. 6개월 이상 소비자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경우, 나는 등록 절차를 다시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 16. PPL에서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때까지 나는 CDPAP에서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.

PA 데이터베이스 확인:

- 17. 등록 과정 중에 그리고 그 후로는 매달, 내가 PA로 있는 동안 PPL은 나에 대한 "데이터베이스 확인"을 실행할 것입니다.
- 18.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연방 정부와 뉴욕주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
- 19.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는 CDPAP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20. 만약 PPL이 이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에서 내 이름을 찾는다면, 나는 CDPAP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.

PA로 일하기

- 21. 내 근무 일정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 DR이 정합니다.
- 22. 내 근무 일정은 내 소비자가 승인 받은 서비스 시간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23. 내 소비자 또는 소비자 DR은,

개인 도우미 계약 V1O



- 나에게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,
- 나의 직무 수행을 감독합니다.
- 24. 내 소비자 또는 소비자 DR은 언제든지 합법적인 이유로 내 일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
- 25.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과 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.
 - 나에게는 근무 일정에 명시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.
 - 소비자가 병원, 요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에 있는 경우, 나는 절대 소비자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습니다.
 - 소비자가 더 이상 CDPAP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경우, 나는 해당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26. 입주 근로자인 경우, 나는 다음 사항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.
 - 매일 밤 최소 8시간의 수면 시간,
 - 매일 밤 최소 5시간 이상의 방해받지 않는 수면 시간, 그리고
 - 매일 아침, 점심, 저녁의 식사 시간(각 1시간) 3회
- 27. 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 DR의 지시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.
- 28. 나는 소비자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를 항상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.
- 29.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, 나는 PPL에 문의하겠습니다.



근무 시간 보고하기

- 30. 근무 시간을 보고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.
 - 나는 휴대폰, 태블릿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PPL의 Time4Care™ 앱을 통해 근무 시간을 보고해야 합니다.
 - Time4Care™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, 나는 소비자의 유선 전화를 이용하거나
 종이 근무 시간표를 제출하는 등 다른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근무 시간을
 보고해야 합니다. 필요한 경우 나의 소비자 또는 PPL이 이에 대한 자세한
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.
 - 나는 Time4Care™ 또는 다른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매 교대 근무 시작 시 로그인하고, 교대 근무 종료 시 로그아웃하여 근무 시간을 보고해야 합니다.
 - 나는 매일 근무한 시간을 보고해야 합니다. 나는 근무 시간을 늦게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.
- 31. 소비자 또는 소비자 DR은 Time4Care™ 또는 다른 승인된 방법을 통해 내가 보고한 근무 시간을 승인합니다.

법원 명령:

- 32. 나는 PPL이 급여에서 돈을 공제하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(일명 "압류").
- 33. 나는 PPL이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.
- 34. PPL은 법원 명령이 완전히 이행되거나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까지 내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할 것입니다.
- 35. 나는 PPL이 법원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

범죄 행동 피하기:

개인 도우미 계약 V1O



- 36. 나는 다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
 - CDPAP는 뉴욕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입니다.
 -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.
 -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종종 "사기, 낭비 또는 학대"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37. 나는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
 - 내가 일하지 않은 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보고하는 행위
 - 내가 수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 돈을 받는 행위
 - 허용된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행위
 - 나의 소비자가 병원이나 기타 치료 시설에 있을 때 근무 시간을 보고하는 행위
 - 근무 시간을 보고할 때 부정직하게 보고하는 행위
- 38. 만약 내가 PA로 일하는 동안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경우,
 -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을 반납해야 합니다.
 - 주 또는 연방정부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.
 - 나는 사기, 낭비, 학대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PPL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:

- 39. CDPAP에 다음과 같은 일을 저지른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, 나는 이를 즉시 PPL에 알려야 합니다.
 - 부정직한 행동(사기, 낭비 또는 학대 행위)을 한 경우
 - 소비자를 재정적으로 학대(소비자의 자금이나 재산을 오용)한 경우
 - 소비자를 신체적, 정서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



- 소비자를 소홀히 한 경우
- 40. 소비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큰 저하나 변화가 생긴 경우 나는 이를 소비자의 케이스 관리자나 PPL에 보고해야 합니다.
- 41.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DR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나는 이를 즉시 PPL에 알려야 합니다.
- 42. 입주 근로자인 경우,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즉시 PPL에 알려야 합니다.
 - 매일 밤 8시간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(그 중 최소 5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수면을 취해야 함) 또는
 - 매일 3회 각 1시간의 식사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것
- 43.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DR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, 나는 이를 즉시 PPL에 알려야 합니다.
- 44. Time4Care™ 또는 PPL 웹 포털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, 나는 이를 즉시 PPL에 알려야 합니다.
- 45. 나는 다음의 경우를 PPL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.
 - 내 연락처 정보의 변경.
 - 내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것을 중단

아래에 서명	함으로써, 나는	- 위에 명시된	민모든 규칙을	따르는 데	동의합니다.

개인 도우미 서명:

날짜: